

② 개정 조문

□ 지방세법

개정 전	개정 후
제107조(납세의무자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 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1. ~ 4. (생 략) 5. 「신탁법」 제2조에 따른 수탁자(이하 이 장에서 “수탁자”라 한다)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<u>위탁자</u> (「주택법」 제2조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, 이하 이 장에서 “위탁자”라 한다).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. 6. ~ 8. (생 략) ③ (생 략)	제107조(납세의무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위</u> <u>탁자</u> [「주택법」 제2조제11호가 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,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(이하 이 호에서 “지역주택조합등”이라 한다)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. 이하 이 장에서 “위탁자”라 한다]. -----. 6. ~ 8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